

국립환경연구원고시제2002-23호

국립환경연구원장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등에해당하지아니하는화학 물질(국립환경연구원고시 제1997-19호, 1997. 12. 23)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유독물등에해당하지아니하는화학물질중개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등에해당하지아니하는화학 물질 별표의 2002-3-2216란 다음에 2002-3-2217 내지 2002-3-225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02년 12월 17일

2002-3-2217	4-[[4-Chloro-6-(1-naphthalenylamino)-1, 3, 5-triazin-2-yl]amino]-5-hydroxy-2, 7-naphthalenedisulfonic acid, disodium salt reaction products with 2-amino-4-[(2, 3-dibromo-1-oxopropyl)amino]benzenesulfonic acid, trisodium salt (CAS NO. 331465-39-5)
2002-3-2218	2, 5-Dihydro-3, 6-bis[3(or4)-methylphenyl]-pyrrolo[3, 4-c]pyrrole-1, 4-dione (CAS NO. 330815-96-8)
2002-3-2219	4, 6-Dichloro-1, 3, 5-triazin-2(1H)-one, sodium salt (CAS NO. 2736-18-7)
2002-3-2220	$\alpha$ -(Carboxymethyl)- $\omega$ -hydroxypoly(oxy-1, 2-ethanediyl), alkyl(C=12-15) ethers, sodium salts (CAS NO. 70632-06-3)
2002-3-2221	Methyl 3-(3-tert-butyl-4-hydroxy-5-methylphenyl) propionate (CAS NO. 6386-39-6)
2002-3-2222	Ethenyl neodecanoate polymer with butyl 2-methyl-2-propenoate, cyclohexyl 2-methyl-2-propenoate, 1, 1-dimethylethyl 2-propenoate, 2-hydroxyethyl 2-methyl-2-propenoate, 2-methylpropyl 2-methyl-2-propenoate, 1, 2-propanediol mono(2-methyl-2-propenoate) and 2-propenoic acid (CAS NO. 164002-59-9)
2002-3-2223	[총칭명]Epoxidized polybutadiene
2002-3-2224	2, 5-Furandione polymer with 1, 9-decadiene and methoxyethene (CAS NO. 136392-67-1)
2002-3-2225	[총칭명]Bis[bis(aminopropylamino)-heteromonocyclic-2-ylamino]-dihydroxy-[[diethyl amino)propylamino-heteromonocyclic]-2, 4-diylbis(imino-phenyleneazo)]-di(disulfonic acid substituted carbopolycyclic) alkanoate
2002-3-2226	[총칭명]Dimeric fatty acids polymer with dicarboxylic acids, alkane(C=3-8)diol, hydrazine, substituted propanoic acids and isocyanated hexane, compds. with alkylamine
2002-3-2227	4-Hydroxybenzaldehyde polymer with acetaldehyde and 3-methylphenol, 6-diazo-5, 6-dihydro-5-oxo-1-naphthalenesulfonate (CAS NO. 181229-58-3)
2002-3-2228	4-Phenylbenzophenone (CAS NO. 2128-93-0)
2002-3-2229	Octadecenyl butanedioic acid mixed esters with diethylene glycol and (tetrapropenyl)butanedioic acid (CAS NO. 165445-21-6)
2002-3-2230	Carbon black, carboxy-modified, sodium salts (CAS NO. 171340-56-0)
2002-3-2231	[총칭명]Benzeecarboxylic acid polymers with alkenoic(C=2-6) acid, alkyl propenoate and disubstituted diphenols, alkoxyalted

2002-3-2232	6-Amino-5-[[4-[[4-chloro-6-[[4-(ethenylsulfonyl)phenyl]amino]-1,3,5-triazin-2-yl]amino]-2-sulfophenyl]azo]-4-hydroxy-2-naphthalenesulfonic acid disodium salt (CAS NO. 350797-46-5)
2002-3-2233	3-[[2-(Acetylamino)-4-aminophenyl]azo]-1,5-naphthalenedisulfonic acid disodium salt, reaction products with 2-[[4-[[4,6-dichloro-1,3,5-triazin-2-yl]amino]phenyl]sulfonyl]ethyl hydrogen sulfate, hydrolyzed (CAS NO. 319926-36-8)
2002-3-2234	[총칭명]Propylated cyclyl trifluorated benzene
2002-3-2235	[총칭명]Propylated cyclyl fluorated biphenyl
2002-3-2236	[총칭명]Ethylated cyclyl fluorated biphenyl
2002-3-2237	[총칭명]Aromatic dicarboxylic acid polymer with alkylcyclicdiol and alkanolic acid compd. with alkylamine
2002-3-2238	Siloxanes and Silicones, di-ME, hydroxy-terminated polymers with boric acid
2002-3-2239	9,13b-Dihydro-1H-dibenz[c,f]imidazo[1,5-a]azepin-3-amine(CAS NO. 80012-43-7)
2002-3-2240	Resin acids and Rosin acids, esters with trimethylolpropane (CAS NO. 84776-83-0)
2002-3-2241	1,2-Dibromo-4-(1,2-dibromoethyl)cyclohexane (CAS NO. 3322-93-8)
2002-3-2242	[총칭명]Phosphino succinic oligomer
2002-3-2243	$\alpha$ -[4-(Ethenyloxy)butyl]- $\omega$ -hydroxypoly(oxy-1,2-ethanediyl) (CAS NO. 126682-74-4)
2002-3-2244	N,N-Dimethyl-N-(3-sulfopropyl)-1-dodecanaminium, inner salt(CAS NO. 14933-08-5)
2002-3-2245	Inulin, carboxymethyl ether, sodium salt (CAS NO. 430439-54-6)
2002-3-2246	[총칭명]Alkanolic acid polymer with substituted alkanediol, alkanolate
2002-3-2247	Dodecyl 2-methyl-2-propenoate polymer with ethyl 2-propenoate, methyl 2-methyl-2-propenoate and tridecyl 2-methyl-2-propenoate (CAS NO. 279247-15-3)
2002-3-2248	(1R,2R,3S,4S)-rel-Bicyclo[2.2.1]heptane-2,3-dicarboxylic acid, disodium salt (CAS NO. 351870-33-2)
2002-3-2249	Siloxanes and Silicones, di-Me, 3-(4-hydroxy-3-methoxyphenyl)propyl group-terminated, polymers with bisphenol A, carbonic dichloride and 4-(1-methyl-1-phenylethyl)phenol (CAS NO. 202483-49-6)
2002-3-2250	[총칭명]Aromatic dicarboxylic acids, monoethylene glycol, ethoxylated and propoxylated bisphenol A and alkylol propane copolymer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 김 석 수  
 국무위원 김 명 자  
 환경부장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시행령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령 제1780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령**

대통령 김대중  
 2002년 12월 18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이유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개정(2002. 2. 4. 법률 제6653호)으로 폐기물의 발생량이 많은 제품·포장재에 대하여 생산자에게 재활용의무를 부과하는 생산자재활용의무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재활용의무 대상이 되는 제품·포장재와 그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에 부과하는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제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플라스틱의 원료인 합성수지에 대하여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던 것을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제품에 한하여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제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영 제10조).

나. 제조자 등이 분리수거를 위하여 분리배출표시를 하여야 하는 제품·포장재를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플라스틱 포장재 등으로 정함(영 제16조).

다. 생산자가 폐기물을 재활용하여야 하는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를 음식료품, 화장품 등을 포장하는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등과 텔레비전, 냉장고, 타이어, 윤활유 등으로 정하고, 생산자가 당해 제품·포장재별로 재활용하여야 하는 재활용의무량의 산출기준과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하지 아니한 양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활용부과금의 산출기준을 정하는

등 생산자재활용의무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18조 내지 제29조).

라.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시에 폐기물이 된 같은 종류의 제품을 무상으로 회수하여야 하는 제품을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등으로 정함(영 제30조).

마. 용기의 회수·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빈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돌려주는 빈용기보증금을 제품값에 포함시킬 수 있는 제품을 유리용기를 사용하는 주류, 청량음료로 정함(영 제31조).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2-6호**

수질환경보전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임시폐수종말처리시설의 공동처리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02년 12월 20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공동처리구역지정·고시**

1. 공동처리구역

구 분	공동처리구역		
	대상지역	면적	비고
파주출판문화 정보산업단지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서패리	1,555,009㎡	

2. 공동처리구역에 대한 관계 도면등은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 및 파주시 도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 한강유역환경정고시제2002-7호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파주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임시폐수종말처리시설 환경오염방지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고시합니다.

2002년 12월 20일  
한강유역환경청장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환경오염방지사업계획고시

#### 1. 사업계획내용

가. 방지사업의 종류: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

나. 방지사업의 규모

- 시설용량: 650m<sup>3</sup>/일
- 설치면적: 1,007m<sup>2</sup>

다. 사업기간 및 지역

- 사업기간: 2002년~2003년
- 사업지역: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서패리

라. 분야별 소요사업비

- 시설설치비: 708백만원
- 연간유지관리비: 123,000천원/년

마. 예상원인자 범위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내의 사업자로서 발생 오·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업체

바. 자원조달방법 및 부담주체별 배분기준

- 자원조달방법: 한국토지공사 자금 100%

사. 본 공단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임시로 통일동산하수처리장(2004.4월) 준공전까지만 운영할 예정이므로 향후 하수처리장 가동시에는 폐수처리지역을 해제하는 조건으로 승인

#### 2. 사업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파주시 상하수도과(031-940-4835)

나. 열람기간: 30일이상

## 환경부고시2002-195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분리배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리배출표시를 하여야 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자 등이 지켜야 하는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2년 12월 24일

환경부장관

### 분리배출표시에관한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가 지켜야 하는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포장재”라 함은 제품의 수송·보관·취급·사용 등의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포장에 사용된 재료·용기 등을 말한다.

2. “다중포장재”라 함은 하나의 제품을 포장하는데 반침점시와 외부포장재 등으로 2개 이상의 분리된 포장재가 사용된 포장재 또는 뚜껑과 본체 등으로 2개 이상의 포장재가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폐기물의 배출시에 분리되어 배출될 수 있는 포장재를 말한다.

3. “복합재질포장재”라 함은 2개 이상의 소재·재질이 혼합되거나, 도포(코팅) 또는 침투(라미네이션) 등의

방법으로 사용된 포장재를 말한다.

4. “무표시포장재”라 함은 포장재의 제조·수입·판매 단계에서 포장재의 표면에 인쇄, 각인 또는 라벨 등 일체의 표시를 하지 않은 포장재를 말한다.

5. “일괄표시”라 함은 다중포장재 등의 주요 구성부분 한 곳에 분리배출표시를 하고, 그 표시 상하·좌우 인접한 곳에 다른 구성부분의 명칭과 재질명을 한꺼번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분리배출표시사업자) 영 제16조의 규정에서 정한 제품·포장재의 분리배출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영 제16조제1호에서 정한 포장재: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을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영 별표 4에서 정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규모미만 사업자를 포함한다)

2. 영 제1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품·포장재: 해당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로서 한국자원재생공사의 사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자

제4조(분리배출표시도안) 분리배출표시의 도안은 별표와 같다.

제5조(분리배출표시 기준 및 방법) 분리배출표시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표시를 하여야 한다.

1. 표시대상 제품·포장재의 표면 한 곳 이상에 인쇄 또는 각인을 하거나 라벨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분리배출표시를 하여야 한다.

2. 분리배출 문자를 제외한 분리배출표시도안의 최소 크기는 가로, 세로 각각 8mm 이상으로 한다.

3. 표시대상 제품·포장재의 전체 색채에 대비되는 색채로 분리배출표시도안을 하여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분리배출표시의 위치는 제품·포장재의 정면 또는 측면으로 한다. 다만, 포장재의 형태·구조상 정면 또는 측면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밑면 또는 뚜껑 등에 표시할 수 있다.

5. 2개이상의 분리된 포장재가 사용되거나 분리되는 다중포장재는 분리되는 각 부분품 또는 포장재마다 분리배출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분리되지 않고 일체를 이루는 다중포장재와 소재·구조상 개별포장재마다 분리배출표시가 어려운 포장재는 주요부분 한 곳에 일괄표시를 할 수 있다.

6. 복합재질포장재는 구성부분의 표면적, 무게 등을 고려하여 주요재질 부분에 분리배출표시를 하되, 그 주요재질명을 분리배출표시도안에 표시하고, 여타의 재질명은 일괄표시 할 수 있다. 다만, 복합재질포장재중 플라스틱 복합재질포장재의 재질표시는 별표 제2호의 플라스틱 도안내부 표시문자중 “OTHER”로 표시한다.

제6조(분리배출표시의 적용예외) ①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무표시포장재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포장재는 분리배출표시를 아니할 수 있다.

1.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제곱센티미터 미만(필름 포장재의 경우 100제곱센티미터 미만)인 포장재

2. 내용물의 용량이 30밀리리터 또는 30그램 이하인 용기

3. 소재·구조면에서 기술적으로 인쇄, 각인 또는 라벨 부착 등의 방법으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②분리배출표시사업자가 식품위생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성수지제의 용기·포장에 대한 재질표시를 한 경우에는 일괄표시를 함에 있어서 구성부분의 명칭과 재질명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지침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표시대상 제품·포장재에 대한 적용례) 이 지침 시행일로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조되어 출고되는 제품·포장재 또는 수입되어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제품·포장재는 분리배출표시를 아니할 수 있다.

③(다른 고시의 폐지) 환경부·산업자원부고시 제93-109호(1993. 12. 10.) 및 환경부고시 제95-23호

(1995. 2. 22)는 이를 폐지한다.

※별표 등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 o.kr) 고시·공고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대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을 이에 공 포한다.

대통령 김대중

2002년 12월 26일

국무총리 김석수

국무위원 김명자

환경부장관

法律 第6826號

大氣環境保全法中改正法律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이유 ※

도시지역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유사용자동차를 무공해·저공해 자동차로 전환하거나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노후차량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제도를 도입하고, 불법 제조된 유류제품 등을 자동차 연료·첨가제로 공급·판매·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수질환경보전법 등 다른 환경법령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함(법 제10조의2 신설).

나.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사용하기 위하여 별도로 받아야 했던 사용승인제도를 폐지하고,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만으로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함(법 제26조제3항).

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제도를 신설하고, 시·도의 조례로 휘발성유기화합물 억제·방지시설의 설치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대기환경관리를 하도록 함(법 제28조의2제2항·제5항 및 제6항 신설).

라. 시·도지사는 도시지역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유사용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자동차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무공해·저공해 자동차로 전환하거나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도록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명령할 수 있도록 함(법 제36조의2).

마. 시·도의 조례로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 특정 장소에서의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원동기가동에 의한 연료낭비와 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도록 함(법 제36조의3 신설).

바.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대상 자동차, 검사방법 등을 정하고, 검사기관의 지정 및 관리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노후 차량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관리체계를 구축함(법 제37조의3 내지 제37조의7 신설).

사. 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 제조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제조된 유류제품 등을 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로 공급·판매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불법연료의 유통에 의한 대기오염을 방지함(법 제41조제2항 신설).

부칙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에서 의결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중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김대중

2002년 12월 26일

국무총리 김석수

국무위원 김명자

환경부장관

**法律 第6827號**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개정이유 ※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연계처리하는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처리수의 유입기준 설정근거를 마련하고, 축산업자가 축산폐수를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방류하는 경우에는 축분을 분리·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며, 2개로 나누어져 있는 분뇨처리시설설계·시공업과 오수처리시설등의 설계·시공업을 오수처리시설등 설계·시공업으로 통합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일부국가사무의 지방자치단체 이양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서 분뇨나 축산폐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연계처리하는 경우 처리수 유입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법 제5조제4항 신설).

나. 시장·군수·구청장은 분뇨 등의 재활용시설이 그 설치·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관리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20조제4항 신설).

다. 축산업자가 축산폐수를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방류하는 경우에는 축분을 분리·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축산폐수의 적정처리를 도모함(법 제2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라. 축산업자뿐만 아니라 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한 분뇨등 처리업자의 경우에도 그 시설의 관리기준에 따라 이를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할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28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마. 분뇨등처리업, 정화조청소업, 오수처리시설등관리업 등 관련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사업 계획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의 적합여부를 검토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검토결과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분뇨 등 관련영업에의 불필요한 투자로 인한 손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바. 현행 분뇨처리시설설계·시공업과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으로 구분된 설계·시공업을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으로 통합함(법 제38조).

사. 분뇨처리시설의 설치·변경승인사무 등의 국가 또는 시·도사무를 시·도 또는 시·군·구로 이양하여 행정의 능률화를 도모함(법 제21조제2항·제23조제3항 및 제24조의2 등).

국회에서 의결된 수질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김대중

2002년 12월 26일

국무총리 김석수

국무위원  
환경부장관 김명자

**法律 第6829號**

**水質環境保全法中改正法律**

※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골프장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골프장안의 잔디 및 수목 등에 관할행정기관의 장의 사전승인 없이 맹독성 또는 고독성 농약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여 국토의 환경보호를 제고하려는 것임.

부칙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분쟁조정법중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김대중 ㉠  
2002년 12월 26일  
국무총리 김석수  
국무위원 김명자  
환경부장관

**法律 第6831號**

**環境紛爭調停法中改正法律**

※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이유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만 수행하는 재정기능의 일부

를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부여하여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조정수행자를 지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활성화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도에 설치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도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의 재정사건을 관할할 수 있도록 함(법 제6조제2항).

나.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기능을 부여함에 따라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명, 재정의 효력 등에 대한 규정을 보완함(법 제7조제2항, 제8조제3항·제4항 및 제42조).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조정의 경우 환경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하고, 조정절차는 당해 사건의 소관 행정청의 소속공무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함(법 제16조제2항).

라. 조정절차 중 일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절차를 간소화함(법 제21조 및 제22조제2항).

마. 재정위원회는 재정이 신청된 사건과 동종·유사 사건에 대한 소송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재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함(법 제45조제3항 신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



원회에 계류중인 조정신청사건에 대한 조정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환경부고시제2002-196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9조제1항,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제1항,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2002년도 가격변동지수와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2002년도 가격변동계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2년 12월 27일  
환경부장관

**배출부과금관련2002년도가격변동지수(계수)**

2002년도 가격변동지수(계수)는 1.0176으로 한다(2003년도 배출부과금 산정지수는 4.0919. 단, 2003년도 대기 기본배출부과금 산정지수는 1.2243로 한다).

부칙

-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배출한 오염물질에 대한 가격변동지수(계수)와 연도별 배출부과금 산정지수는 환경부고시 제2001-188호(2001. 12. 21.)에 의한다.

**환경부고시제2002-201호**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천양문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 구역내의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적정처리가 가능한 항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02년 12월 28일  
환경부장관

**포천양문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공동처리 구역내의별도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

포천양문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내의 폐수배출시설이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차집관로에 배수설비를 연결한 경우, 당해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화학적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 수소이온농도, 총질소, 총인, 색도, 노말핵산추출물질(광·동식물유지류)의 배출허용기준은 원폐수로 한다.

부칙

-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총질소 및 총인의 배출허용기준은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환경부고시제2002-202호**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52조 관련 별표 11 비고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포천양문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2년 12월 28일  
환경부장관

**포천양문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1. 항목 : 수소이온농도, 색도, 노말핵산추출물질(광·동식물유지류)

2. 방류수수질기준

- 수소이온농도 : 5.8 ~ 8.6
- 색도 : 100도이하
- 노말핵산추출물질(광유류) : 1mg/ℓ 이하
- 노말핵산추출물질(동식물유지류) : 10mg/ℓ 이하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에서 의결된 소음·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김대중인

2002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석수  
 국무위원 김명자  
 환경부장관

法律 第6845號

騒音·振動規制法中改正法律

※ 소음·진동규제법 개정이유 ※

시·도지사로 하여금 관할 지역내의 소음·진동실태를 상시 측정하도록 하고, 소음·진동배출시설업소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소음·진동배출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사항이 그 설치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사항과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관련업계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함(현행 제13조제3항 삭제).

나. 배출시설 설치허가의 취소 또는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며, 조치명령·개선명령 등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를 하고,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이행상태 또는 개선완료상태를 확인하도록 함(법 제18조 및 제22조 신설).

다. 교통소음·진동 규제지역안에서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한 도로교통법에 의한 속도의 제한·우회 등의 필요조치 요청권자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조정함(법 제30조).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정책기본법중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김대중인

2002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석수  
 국무위원 김명자  
 환경부장관

法律 第6846號

環境政策基本法中改正法律

※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이유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도모하고, 자원의 순환적 이용과 사전예방 중심으로 환경정책의 기조를 전환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환경계획을 내실화하여 국가 및 지역 수준의 환경보전기반을 튼튼히 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국민은 일상생활에 따르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줄일 뿐만 아니라 국토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제품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제품의 사용·폐기에 이르기까지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사전예방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함(법 제6조 및 제7조의2).

나. 정부는 환경과 경제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도록 하고, 자원 및 에너지의 절약과 재활용 등 자원의 순환적 사용을 촉진하도록 함(법 제7조의3 및 제7조의4 신설).

다.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을 국가환경종합계획으로 명칭을 바꾸고, 동 계획에 자연환경보전·국토환경보전·대기환경보전·수질환경보전·폐기물관리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동 계획이 국가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계획이 되도록 함(법 제12조 내지 제14조).

라. 지역수준에서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사전예방하고 개발과 보전을 조화할 수 있도록 시·군·구 단위에서 환경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함(법 제14조의4 신설).

마. 개발에 따른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환경계획을 고려하도록 하고, 환경친화적 계획기법을 개발·보급하도록 함(법 제14조의5 및 제15조의2 신설).

바.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의 변경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국가는 그 기준을 제정·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도록 함(법 제20조의2 신설).

사. 정부 등은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위해성을 평가하고 환경성질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법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 신설).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교통·에너지·농림어업 등의 부문에서 환경친화적인 노력을 하도록 명시함(법 제21조의5 신설).

자.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 제도의 시행에 따른 이행의 관리·감독수단 등을 보완하고, 국가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법 제25조 내지 제28조 신설).

**환경부공고제2002-168호**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릴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12월 31일  
환경부장관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지원사업대상을 확대하는 등 주민지원사업제도를 개선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내의 토지등을 매입할 경우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매수우선순위의 선정기준 및 방법에 따라 토지등을 매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상수원보호구역내 재산권이 없는 생업종사자에 대하여 일반지원사업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등 지원대상사업의 범위를 조정하고, 각종 지원시설의 구입·설치비만 지원하던 것을 운영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사업계획수립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절차에 따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사업변경에 따른 재심의 대상 및 절차를 명확하게 정함.

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03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3. 기타문의

환경부 수질정책과에 문의(전화: 2110-6830~2)

**환경부고시제2002-205호**

**환경부고시제2002-204호**

환경개선특별회계융자금지원조건등결정중개정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산정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개선특별회계융자금지원조건등결정」(환경부고시 제 2002-151호, 2002. 10. 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2년 12월 31일

환경부장관

2002년 12월 31일

환경부장관

**2003년도환경개선부담금부과금산정지수**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03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 산정지수는 1.490

융자조건

사 업 명	지원대상	현 행	변 경(안)	증 감 비	고
1. 중소도시지방상수도개발	지자체	4.32% (4.42%)	4.23% (4.33%)	△0.09% (△0.09%)	-5년거치, 10년상환
2. 하수슬러처리시설설치	"	"	"	"	"
3. 연안지역하수처리장설치	"	"	"	"	"
4. 하수관거정비	"	"	"	"	"
5. 하수처리장고도처리시설정비	"	- (-)	"	"	" (신규)
6.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	4.32% (4.42%)	"	"	-3년거치, 7년상환
7. 천연가스자동차보급	민간	4.00% (5.00%)	4.00% (5.00%)	- (-)	-5년거치, 10년상환 -2003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
8. 재활용산업 시설 및 기술육성	" 개발자금	4.42% (5.42%)	4.33% (5.33%)	△0.09% (△0.09%)	-3년거치, 7년상환

경영안정 및  
제품유통·판매

-2년거치, 3년상환

- ※ 1. 취급수수료 지급기준: 용자업무위탁기관 0.1%, 금융기관 0.9%
- 2. 명시되지 않은 용자사업('98이후)의 경우 지원대상에 따라 상기조건을 준용함.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환경부령 제136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3년 1월 4일  
환경부장관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

❖ 개정이유 ❖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인증시험수수료를 이 규칙에서 정하던 것을 민간시험기관의 경우에는 시험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제작자동차중 경자동차와 경유를 사용하는 승용 1·승용2 자동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국내·외 기술수준에 적합하게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자동차를 제작하는 경우 그 제작차의 배출가스가 일정한 보증기간동안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인증함에 있어서 인증시험기관이 실시

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시험의 수수료를 국립환경연구원의 경우에는 별도의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그밖에 민간시험기관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제70조제5항 및 제6항).

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휘발유 자동차에 대하여는 CVS-75모드에 갈음하여 IM240모드로 배출가스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과급기 및 중간냉각기를 부착한 경유자동차는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매년측정기준을 5%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함(별표 20).

다. 제작자동차중 경자동차와 경유를 사용하는 승용 1·승용2 자동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국내·외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10년 또는 16만킬로미터에서 5년 또는 8만킬로미터로 완화함(별표 21).

라. 희박연소방식을 적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운행차 배출가스검사시에 공기과잉율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별표 25 및 별표 26).

마. 자동차 배출가스의 중간검사기관의 시설·인력 기준을 완화하여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도록 함(별표 27의4).

**환경부고시제2002-209호**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수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내의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중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적정처리가 가능한 항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03년 1월 6일  
환경부장관

여수국가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공동처리구역내의  
별도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

### 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

여수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내  
의 폐수배출시설에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차집관로에  
배수설비를 연결한 경우 폐수배출시설의 오염물질배출  
허용기준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화학적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 총인의 배출허용기준은 원폐수의 수질로  
노말핵산추출물질함유량 및 페놀류함유량은 각각 20  
mg/l 이하, 총질소는 120mg/l 이하로 한다. 다만, 폐수  
배출시설중 “코코스 및 관련제품제조시설”, “석유정제  
품제조시설”,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 제조시설”, “석  
탄화합물 제조시설”, “천연수지 및 나무화합물 제조시  
설”, “기타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산업용가스제  
조시설”, “합성연료 및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  
설”,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합성고무 제조시  
설”,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시설”, “의약  
품제조시설”, “살충제 및 기타 농약제조시설”, “도료, 인  
쇄잉크 및 유사제품 제조시설”, “계면활성제, 치약, 비  
누 및 기타 세제 제조시설”, “화장품 제조시설”, “표면  
광택제 및 실내가향제 제조시설”, “비감광성 기록용 매  
체,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시설”, “가공염  
및 정제염 제조시설”,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시설”, “화학 및 불꽃제품 제조  
시설”,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시설”, “화학섬유  
제조시설”,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의 생물화  
학적산소요구량, 화학적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의 배  
출허용기준은 300mg/l 이하로 한다.

또한, 폐수배출시설중 석유화학업종 등 특정사업장에  
서 배출되는 폐수에 함유된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등으

로 인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  
록 조치하여야 한다.

부칙

-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총질소·총  
인에 대하여는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②환경부고시 제1998-106호(98. 9. 29)는 폐지한다.

### 환경부고시제2002-219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대상제품  
및인증기준(환경부고시 제2002-96호, 2002. 6. 26.)  
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3년 1월 6일  
환경부장관

### 환경표지대상제품및인증기준중개정

환경표지대상제품인증기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다음 각호와 같다.”를 “별표 1과 같다.”로 하  
여 별지 1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다음 각호와 같다.”를 “별표 2와 같다.”  
로 하여 별지 2와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에 의한 별표2의 내용은 분량이 많아 요  
약문만 별지2에 게재하고, 개정전문은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e.go.kr)및 환경마크협회 인터넷 홈  
페이지(www.kela.or.kr)에 게재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동 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환경경제  
과(전화 : 02-504-9242) 및 환경마크협회(전화 :  
02-358-6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02-210호**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국가 및 익산제2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내의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중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적정처리가 가능한 항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03년 1월 7일  
환경부장관

**익산국가및익산제2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공  
동처리구역내의별도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

○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

익산국가 및 익산제2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내의 폐수배출시설에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차집관로에 배수설비를 연결한 경우 폐수배출시설의 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화학적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 총인의 배출허용기준은 원폐수의 수질로, 총질소의 배출허용기준은 200mg/l 이하로 한다. 다만, 폐수배출시설중 “주정제조 및 주조시설”, “가죽, 모피가공 및 제품제조시설”,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 제조시설”, “기타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시설”, “의약품제조시설”, “계면활성제,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시설”,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시설”,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시설”의 화학적산소요구량은 360mg/l 이하로 한다.

부칙

-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총질소·총인에 대하여는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②환경부고시제1998-86호(1998. 8. 1)는 폐지한다.

**국립환경연구원고시제2003-1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성적서발급시험연구기관의지정(국립환경연구원고시 제2002-9호, 2002. 5. 3.)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3년 1월 8일  
국립환경연구원장

**시험성적서발급시험연구기관의지정개정**

1. 지정번호 : 0301-1
2. 지정기관명칭 : (주)바이오톡스텍
3. 소재지 :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양청리 686-2  
오창과학산업단지 58-1블록
4. 대표자 : 강종구
5. 운영책임자 : 박종일
6. 시험의 범위 : 건강영향시험분야
  - 가. 급성경구독성시험
  - 나. 급성경피독성시험
  - 다. 급성피부자극성 및 부식성시험
  - 라. 급성안자극성 및 부식성시험
  - 마. 피부감작성시험
  - 바. 아급성독성시험
  - 사. 만성독성시험
  - 아. 유전독성시험
  - (복귀돌연변이시험, 염색체이상시험, 소핵시험)
  - 자. 생식능 및 차세대영향시험

차. 최기형성시험  
 카. 발암성시험

구원고시 제1997-3호, 1997. 9. 8)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부칙 2003년 1월 9일  
 국립환경연구원장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지고시) 국립환경연구고시 제2002-9호(2002. 5. 3)는 이를 폐지한다.

**유독물 · 관찰물질중 개정**



**국립환경연구원고시제2003-2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 · 관찰물질지정(국립환경연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 · 관찰물질지정 별표1의 2002-1-534란 다음에 2003-1-535란을, 별표2의 2002-2-12란 다음에 2003-2-13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별표1]

유 독 물(제3조 관련)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유독물의 표시사항		
		유해성	취급시 주의사항	유해그림
2003-1-535	2, 2' - [메틸렌비스[(2,6-디메틸-4, 1-페닐렌)옥시메틸렌]]비스옥시란[2, 2' - [Methylenebis[2,6-dimethyl-4, 1-phenylene]oxymethylene]]bisoxirane ; 93705-66-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생물질에 매우 유독함</li> <li>· 비가역적 영향을 미칠 위해 가능성이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에 배출을 피할 것</li> <li>· 적절한 보호복과 보호 장갑 및 안전보호구를 착용할 것</li> </ul>	 환경유해성  유해성

관찰물질(제4조 관련)

고 유 번 호	화	학	물	질	의	명	칭
2003-2-13	3	-	메	톡	시	부	틸 클로로포름에이트[3-Methoxybutyl chloroformate : 75032-87-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